

제1절 복지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회복지는(Social Welfare)은 OECD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제10조]’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평균적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전 급부를 포함하여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 문제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¹¹¹

1)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의 2가지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만약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 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된다. 곧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¹¹²

111.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253쪽

112.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표 29> 울진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천 원 이하, 1인 가구/월)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비고
2015	437	624	671	781	1,562	
2016	471	649	698	812	1,624	
2017	495	661	710	826	1,652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절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한 자료를 통합조사팀에서 접수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를 하고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판정 결과 등을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하며 해당자에게 통지는 사업부서에서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방식이다.¹¹³

<표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설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자활 특례자		
2015	2,050	3,068	2,050	2,876		27	22	34	109
2016	1,983	2,851	1,983	2,680	1	12	23	33	102
2017	1,845	2,589	1,845	2,423		8	14	40	104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실시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2013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4만 6399원, 현금 급여는 126만 6089원

113.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253쪽

이다. 여기서 ‘현금 급여 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타법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돈을 받지만, 근로 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自活)’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조사한다. 확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1) 생계급여

의복·음식물·연료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2)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전·월세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자가(自家)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보수 등 현물로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3) 교육급여

저소득 자녀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4)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배인 120만 원을 지급한다.

(5)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구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5년	2,247	6,616,660	92	69,000	2	1,200
2016년	2,311	7,888,352	104	78,000	2	1,200
2017년	2,139	7,788,666	95	71,200	2	1,200

출처 :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255쪽

4) 의료급여사업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특수계층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보장한다.¹¹⁴

<표 32>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상자	인원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3,128	2,892	2,650
	의료급여수급자(1,2종)	3,023	2,795	2,550
	시설입소자	105	97	100
1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93	2,272	2,127
	국가유공자	108	95	78
	북한이탈주민	2	4	1
2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20	424	344

114.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255쪽

(2) 급여의 범위 및 방법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지급, 의료시설에서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표 3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3) 진료체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차 진료 기관[보건기관, 의원]과 2차 진료 기관[병원급]을 지정하고, 2차 진료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특수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3차 진료 기관[종합병원급]을 지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5)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실시하거나,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근로기회제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도모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¹¹⁵

115. 윤진군,『군정백서』2015~2017, 2556쪽

<표 34> 자활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2015년	120	58	21	41
2016년	96	48	16	32
2017년	91	16	31	44

<표 35> 자활사업 지원내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활사업 참여인원	120	96	91
사업비	1,057,259	904,025	934,709

6) 지역자활센터 지정 운영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울진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¹¹⁶

<표 36> 지역자활센터 현황

운영주체	센터명	센터장	소재지	지정시기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지역자활센터	황천호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2004. 4. 1.

<표 37> 지역자활센터 지원실적

(단위: 천원)

구분	사업 유형별		
	계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2015년	1,025,732	217,700	808,032
2016년	977,795	232,230	745,565
2017년	1,094,997	257,957	837,040

116.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표 38>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	비고
2015년	73	12	61	
2016년	66	9	57	
2017년	77	11	66	

7)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긴급구호 양곡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서 어려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표 39> 긴급구호 양곡 지원 현황

(단위: 가구, 천원)

구분	가구 수	수량(단위:20kg)	금액	비고
2015년	691	842	40,000	백미
2016년	345	421	20,000	백미
2017년	345	421	20,000	백미

제2절 사회복지와 정책

1. 보훈사업

울진군은 조국과 민족의 위기에 멸사보국의 충성을 다하고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 계승하기 위하여 충혼탑을 세워 우리 고장 선열의 넋을 한자리에 모시고 추모하고 있다.¹¹⁷

117. 울진군, 『군정백서』2015~2017, 256쪽